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

(이종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9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발 의 자: 이종배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정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영철, 김형재, 문성호,
박성연, 박영한, 송경택,
이경숙, 최호정, 허 훈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.
- 나.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.
- 다.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(안 제4조~제5조).
- 라. 포상 규정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환경”이란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.
2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3. “교육환경보호구역”이란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·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) 교육감은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현황 조사 및

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, 자치구, 서울경찰청,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)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문 서 번 호

2023101600000086

비 대 상 사 유 서

요 청 인 : 이종배 의원

담 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 수 일 : 2023.10.16.

회 신 일 : 2023.10.19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(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지원), 제5조(협력체계 구축), 제6조(포상)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(체육건강문화예술과) 문의결과 아래와 같이 관련사업을 기추진 중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※ 기추진 사업 현황

(단위 : 천원)

관련조항 (내용)	기추진 사업	예산액
제4조 제5조	-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시스템 관리용역	276,808
	- 교육환경보호제도홍보 및 연수	9,630
	- 교육환경평가제도법률자문	1,320
	-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운영	27,640
	-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운영	171,600
제6조	※ 각급학교 운영비로 시행중	-

(2023년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예산서 참조)

※ 참고자료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을 붙임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주 무 관 박지영

☎ 02-2180-7952
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

다양성이 꽃피는
공존의 혁신미래교육



미래를 보호하는 교육환경, 함께 만드는 교육환경

2023년도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

2022. 12.

서울특별시교육청
[체육건강문화예술과]

I. 추진 배경

□ 제1차 계획('18.~'22.) 완료 → 제2차 계획('23.~'27.) 수립 추진

○ (교육부장관)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'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'을 수립·시행

※ (내용) 교육환경보호정책 기본방향, 교육환경보호 교육·홍보, 기타 교육환경보호 필요사항

○ (교육감)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

□ 교육환경보호 영역 확장 및 교육환경보호제도 활성화

○ 1차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과제는 지속·확대, 미흡한 과제는 보완·개선을 통해 기본계획 내실화 노력 지속

○ 수동적 개념의 '보호'에서 탈피하여 학생성장 및 교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·능동적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

□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공적 책무성 및 실효성 강화

○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, 교육 및 홍보,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 등으로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실행력 확보

II. 지역 현안 문제점

□ 학교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잦은 마찰 발생

○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 중 '교육환경보호구역' 차지 비율 39.2%

※ 전국 행정구역(1,004억㎡)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은 2.76%에 불과

- 타 시·도 교육청에 비해 개발사업(재개발, 재건축, 리모델링, 대규모건축) 관련 교육환경평가 및 민원 건수가 매우 높은 경향

○ '교육환경 보호'와 '사유재산권 보장'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쟁 발생

- 학교(학부모, 지역주민)와 개발 사업자 간 의견 대립 및 심의 결과(교육환경평가, 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)에 대한 다양한 민원 발생

□ 교육환경평가 승인 사업지의 사후관리 업무 과다

○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과 실제 공사내용 상이, 사후관리 중요성 대두

○ 업무량 대비 담당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 호소

□ 신·변종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의 한계

- 마사지, 키스방 등 신·변종업소의 경우 자치구(인·허가 기관)에 등록, 신고 절차 없이 자유업종으로 영업
- 대부분 생계형 업소로, 고발 조치에도 벌금을 내고 영업 유지

Ⅲ. 추진방향(해결방안)

□ 교육환경평가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심의기능 강화

-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교육(지원)청 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 확대
- 심의 시 보호 대상교 관계자(학부모 포함)의 다양한 의견 청취

□ 교육환경평가 승인 사업지 사후관리 철저

-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도모를 위해 인·허가 기관과의 협업 및 정보 공유(개발계획 수립·변경 시 사전 협의)
-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교육환경 평가의 이행사항을 확인 등의 예방조치로 교육환경 피해 최소화

□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관계기관 협업 강화

- 관계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학교주변 불법 신·변종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(지속적 합동점검)

Ⅳ. 2023년 성과목표 및 지표

□ 성과목표

- 교육환경보호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수 추진
-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주변 유해요인 근절
- 학교주변 유해시설 이전·폐쇄 조치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□ 성과지표

'23년 성과지표 명	단위	'23 목표	비고
교육환경보호 업무의 전문성 제고	명	- 교육환경평가 업무 담당자 연수 추진(30명)	전문기관 연수 병행
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	회	- 교육지원청별 연 12회 이상(월 1회 이상)	총 132회
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 강화	개	-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업소 수 감소(11개→9개)	이전·폐쇄

IV. 예산 현황

사업명	재원(백만원)				비고
	계	교특지원금	특별교부금	기타	
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	28	28			
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	172	172			
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 및 연수	7	7			
학교주변유해업소 합동단속	21	21			
교육환경평가제도 법률자문	1	1			
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 환경평가시스템 관리용역	277	277			
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	22,246	22,246			
학교 내 안전한 석면 관리	708	708			
합 계	23,460	23,460			

2 제2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과제

세 부 추 진 과 제	작성 대상	비고
1. 법적·제도적 기반 안정화		
1-1. 교육환경보호체계 개편 및 관련 정책 기반 강화		
1-1-1. 교육환경보호 정책 추진체계 개편	일부 대상	
1-1-2. 교육환경보호 관련 법·제도 개선	일부 대상	
1-1-3. 교육환경보호 정책의 R&D 역량 강화	비대상	
1-2. 교육환경평가 승인 사업장 사후관리 확대		
1-2-1.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확대·강화	대상	
1-2-2. 교육환경평가 승인 사업장 표준디자인 적용 및 우수사례 홍보	비대상	
1-3. 교육환경평가 대행체제 안착 기반 마련		
1-3-1. 교육환경평가 대행제도 법제화 추진	비대상	
1-3-2. 교육환경평가 민간전문가양성	비대상	
1-3-3. 교육환경평가 대행업무 및 평가과정 참여 확대	비대상	

세 부 추 진 과 제	작성 대상	비고
2. 교육환경보호 지원체계 고도화		
2-1. 교육환경보호 정책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		
2-1-1. 국가 및 지역의 정책 추진 협력 강화	일부대상	
2-1-2. 교육환경 관련 협력 네트워크 강화	대상	
2-2. 교육환경보호 업무 전문성 제고		
2-2-1. 교육환경보호 조직·인력 역량 강화	대상	
2-2-2.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	대상	
2-3. 교육환경 디지털정보시스템 확대		
2-3-1. 디지털기반 스마트업무지원시스템 구축	비대상	
2-3-2. 시스템 고도화 및 DB자료 확대·구축	비대상	
3.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		
3-1. 학교내 교육환경 관리 강화		
3-1-1. 학교내 환경위생 관리 강화	대상	
3-2. 학교주변 교육환경 관리 강화		
3-2-1.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강화	대상	
3-2-2. 교육환경평가 제도운영 실효성 강화	대상	

<세부사업>

☐ 관리번호	1-1-1
☐ 세부과제명	교육환경보호체계 정책 추진체계 개편
☐ 주관부서 (협조부서)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최경훈 전문관(02-399-9579)

1. 사업목적

- ☐ 교육환경보호 업무 지원 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연계 확대

2. '23년도 주요 추진내용

- ☐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수행 업무 확대 및 기능 강화

○ 교육환경평가서 처리 과정 온라인화[교육부, 전문기관, 교육(지원)청 협업]

- 교육환경평가서 검토, 승인 여부 이행점검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기능 확대

3. 세부 추진일정

☐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 수행 업무 확대 및 연계 강화(연중)

-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시 컨설팅 및 현장 방문 지원 요청
- 교육환경평가 승인 사업장 사후관리 점검 시 기술 지원 요청
- 교육환경보호 외 기타 환경위생분야 업무 지원 확대
 - 교사 내 공기질, 먹는 물, 석면 및 라돈관리 등 환경위생 분야 업무 및 미세먼지, 공기정화장치 등 업무 지원 요청

4. 투자계획

☐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시스템

세부사업명	내용	계획(백만원)			
		총계	지방비		기타
			보통	특별	
교육환경보호구역 및 교육환경평가시스템	교육환경보호구역및교육환경평가시스템관리용역	277	277		

☐ 관리번호	1-2-1
☐ 세부과제명	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확대·강화
☐ 주관부서 (협조부서)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최경훈 전문관(02-399-9579)

1. 사업목적

- ☐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이행사항 확인·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
- 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항 이행확인 점검 등을 통한 교육환경 피해 최소화과 학교 및 사업관계자 간 갈등요소 조정

2. '23년도 주요 추진내용

- ☐ 교육환경평가 승인 사업장 등급별 사후관리 확대

○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사업지를 대상으로 승인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

○ 학교 주변 사업지의 공사 착공 이후부터 승인내용의 이행사항을 조사, 확인하여 공사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 요인과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 [관리등급에 따라 단계별(1~2등급→모든 공사현장) 확대]

*** 사업별 관리등급 구분**

사업규모 이격거리	대규모 (대지규모 10만㎡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㎡ 이상)	중규모 (대지규모 1만㎡ 이상 10만㎡ 미만)	소규모 (대지규모 1만㎡ 미만)	비고
50m 이내	1등급			절대보호구역
50m 초과 100m 이내	1등급	2등급	3등급	상대보호구역
100m 초과 200m 이내	3등급			

3. 세부 추진일정

□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

○ 주관: 11개 교육지원청

○ 점검반 구성: 교육지원청(행정지원과, 평생교육건강과, 학교시설지원과), 학교(학부모 포함), 자치구(인·허가기관) 등

○ 시기: 정기점검(연 1회 이상) 및 특별점검(필요 시)

<점검 내용>

- 착공 전: 승인내용 및 권고사항 반영 결과와 가시적으로 파악 가능한 보고서, 도면 등 관련 자료 점검(현지조사 제외)
 - 공사 중: 관련자료 점검 및 필요 시 건설공정 단계별 조치계획 이행 적절성 확인(가급적 철거, 토공사, 기초공사 시 현장점검 실시)
 - 공사중지: 공사 중지 원인, 공사재개 예정일, 현 공정단계의 승인내용 이행 현황과 가시적 파악 가능한 사진, 도면 등 점검
- ※ 평가서 승인내용 또는 권고사항 미 이행시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명령
- ※ “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안내서(교육부)”, “교육환경평가 사후 업무 매뉴얼(교육부)” 및 “교육환경평가제도의 이해” 참조

4. 투자계획: 비예산

☐ 관리번호	2-1-1/2-1-2
☐ 세부과제명	국가 및 지역의 정책 추진 협력 강화 교육환경 관련 협력 네트워크 강화
☐ 주관부서 (협조부서)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최경훈 전문관(02-399-9579)

1. 사업목적

- 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- ☐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유관 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학교 주변 유해요인의 근절

2. '23년도 주요 추진내용

☐ 교육환경보호 관련 중앙부처 위원회 위원 추천

- 교육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 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중앙 부처 관계 위원회에 위원(교육환경보호위원회 소속) 추천
 -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및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

☐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도모를 위해 인·허가 기관과의 협업과 정보 공유

- 교육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 인·허가 기관 통보 의무화
-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 인·허가 기관 통보 의무화
- 환경기준 초과, 교육환경평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관리 요청
-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 추진

☐ 교육환경평가 및 유해업소 인·허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

- 교육환경평가 관계기관 소속 위원회와의 협력
 - 도시계획, 건축심의, 환경영향평가, 교통환경평가 등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등과의 협력체제 강화
 - * 도시 개발사업 관련 기관 협의·위원 추천,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등

-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
 - 25개 자치구(문화체육과, 위생과, 환경과 등) 및 경찰서

3. 세부 추진일정

☐ 교육환경보호제도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(수시)

-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 및 의견 조취(개발계획 변경 포함)
-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 이행 여부 합동점검 및 미이행 시 행정조치(공사중지 등) 협조 요청

☐ 학교주변 유해시설 점검 및 관리

- 점검 시기: '23. 1.~12.
 - 월 1회 이상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(교육지원청 주관 단속반 구성)
 - 연 2회 이상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(학교 주관)
 - 연 2회(3월, 9월 개학기)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추진

4. 투자계획

☐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

세부사업명	내용	계획(백만원)			
		총계	지방비		기타
			보통	특별	
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	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	21	21		

☐ 관리번호	2-2-1
☐ 세부과제명	교육환경보호 조직·인력 역량 강화
☐ 주관부서 (협조부서)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최경훈 전문관(02-399-9579)

1. 사업목적

- ☐ 교육(지원)청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육환경보호 제도의 기능강화

2. '23년도 주요 추진내용

☐ 교육환경평가 업무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개최

○ 교육(지원)청 업무 담당자 연수: 연 1회 이상

3. 세부 추진일정

☐ 교육환경평가 업무 관계자 역량 강화 및 전문직위 운영

○ 교육환경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 연수

- 일시: 2023. 12.

- 대상: 교육(지원)청 교육환경평가 업무 담당자 40명

- 내용: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이해, 사후교육환경평가 심의 운영 기준,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요령과 이행 사항 확인 출입조사 등

○ 교육환경평가 담당공무원 전문직위(전문관) 지정·운영: 2020. 1.~

4. 투자계획

☐ 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 및 연수

세부사업명	내용	계획(백만원)			
		총계	지방비		기타
			보통	특별	
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 및 연수	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 및 연수	7	7		

☐ 관리번호	2-2-2
☐ 세부과제명	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기능 강화
☐ 주관부서 (협조부서)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최경훈 전문관(02-399-9579)

1. 사업목적

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

2. '23년도 주요 추진내용

- ☐ 교육(지원)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보호 제도 이해
 - 심의 위원회의 역할, 청렴교육 등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

3. 세부 추진일정

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전문성 연수(연 1회 이상, 수시)

- 교육환경평가 제도, 청렴 및 관계법령 교육
 - 전문기관(한국교육환경보호원)에 교육 의뢰('23. 5.)
- 법령 개정 및 위원 신규 위촉 시 위원회별 교육 실시(수시)
-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 이행 여부 확인 시, 현장 확인 필요 시 교육환경위원회 전원 현장 확인 및 연수 실시
 - * (2022. 1.) 제1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 시 위원 전체 현장 확인 후 심의

4. 투자계획: 비예산

☐ 관리번호	3-1-1
☐ 세부과제명	학교내 환경위생 관리 강화
☐ 주관부서 (협조부서)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문선미 주무관(02-399-9592), 박인훈 주무관(02-399-9680)

1. 사업목적

☐ 학교 공기질 측정 및 관리 고도화

-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학교 내 공기질 점검주기 단축 및 관리기준 강화 필요
- 학교에 설치한 공기정화장치 렌탈비를 지원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

☐ 학교 건축물내 미제거 석면 관리 강화

- 학교 내 석면 일상관리 강화 및 현장 컨설팅 지원 추진

☐ 학교 먹는물 관리 강화

-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

2. '23년도 주요 추진내용

☐ 학교 공기질 측정 및 관리 고도화

- 학교시설 내 공기질 측정 항목 재정비 및 측정방법의 고도화
 - 학교 실내공기질 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
-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속적 지원

☐ 학교내 안전한 석면 관리

- 학교 석면 검증 및 안전관리인 역량 제고
 - 학교별 석면지도 검증 및 무석면 학교 인증 실시
 - 학교 현장 중심 석면 관리 방법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인 역량 제고 및 일상관리 강화

☐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

- 먹는물 공급 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 등 위생관리 철저

3. 세부 추진일정

☐ 학교 공기질 측정 및 관리 고도화('23. 1.~12.)

- 학교 시설 내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실시 및 분석(8개교)
- 학교 미세먼지관리대책 수립 및 안내
-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(92,494대)

☐ 학교내 안전한 석면 관리('23. 1.~12.)

- 학교내 손상 석면 관리 및 보수를 통한 일상관리
- 학교 석면지도 및 무석면 학교 검증(150개교)
- 학교 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 지원(480명)
- 학교 현장 석면안전관리 방법 교육(100교)

☐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('23. 1.~12.)

- 분기별 점검을 통한 수질 및 위생 점검 관리

4. 투자계획

☐ 학교 내 환경위생 관리 강화

세부사업명	내용	계획(백만원)			
		총계	지방비		기타
			보통	특별	
학교 공기질 측정 및 관리 고도화	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	22,246	22,246	0	0
학교내 환경위생 관리 강화	학교내 안전한 석면 관리	708	708	0	0

☐ 관리번호	3-2-1
☐ 세부과제명	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강화
☐ 주관부서 (협조부서)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최경훈 전문관(02-399-9579) (11개 교육지원청, 25개 자치구, 경찰서 등)

1. 사업목적

- ☐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2. '23년도 주요 추진내용

☐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불법업소 관리 강화

- 교육지원청별 매월 1회 이상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합동 단속 실시(자치구, 경찰서, 학교, 학부모, 민간단체 등)
- 중앙부처(경찰서 주관) 연 2회 이상 관계행정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(3월, 9월 신학기 개학 전)
-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불법업소, 신변중업소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
- 불법업소에 대해 관계기관에 (연2회)정화요청 및 (연1회)고발조치
- 고질적 유해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철거 등을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 검토

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현장확인 강화

-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현장방문을 통해 통학로와 현장여건 등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

3. 세부 추진일정

☐ 교육지원청 단위 합동단속반 구성·운영('23. 1.~12.)

○ 월 1회 이상 학교주변 관계기관(교육지원청, 자치구, 경찰서, 학교 등) 합동단속 실시

☐ 불법업소 점검 및 관계기관 교육환경보호 조치 요구(수시)

○ 불법 금지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관계기관에 정화요청, 고발을 통해 이전·폐쇄 노력

☐ 교육환경보호구역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

○ 기간: 정기점검(연 2회) 및 수시점검

○ 주관: 교육지원청 및 학교

○ 대 상: 관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

○ 추진내용: 불법으로 설치, 운영 중인 금지행위 및 시설 여부 확인

4. 투자계획

☐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

세부사업명	내용	계획(백만원)			
		총계	지방비		기타
			보통	특별	
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	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	21	21		

☐ 관리번호	3-2-2
☐ 세부과제명	교육환경평가 제도운영 실효성 강화
☐ 주관부서 (협조부서)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최경훈 전문관(02-399-9579)

1. 사업목적

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사항에 대한 이행 도모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

2. '23년도 주요 추진내용

☐ 관계기관 협업 및 사후 점검 등을 통한 관리체계 내실화

○ 자치구(사업시행 인·허가 기관)와 정보 공유 체계 구축

- 개발사업 진행사항 공유 및 합동점검 실시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사후관리 철저

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관리대장 작성·비치

○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·지속적 관리

3. 세부 추진일정

☐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('23. 1.~12.)

○ 대상: 교육(지원)청 및 서울시, 자치구

○ 내용: 교육환경평가 승인 사항 이행 여부 및 변경사항 확인

4. 투자계획

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

세부사업명	내용	계획(백만원)			
		총계	지방비		기타
			보통	특별	
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	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	28	28		

참고 1**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**

2022. 12. 1. 기준

□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(총괄)

업종별/연도별		2018	2019	2020	2021	2022
1	도축.화장.납골시설	-	-	-	-	-
2	유흥.단란주점	1	1	1	1	1
3	숙박시설 (호텔,여관,여인숙)	2	1	1	1	1
4	당구장	1	1	1	-	-
5	게임제공업,인터넷컴퓨터, 복합유통	1	-	-	-	-
6	만화가게	8	7	5	5	-
7	노래연습장	6	4	1	-	-
8	비디오감상실	-	-	-	-	-
9	무도학원	-	1	1	-	-
10	성기구취급업소	8	3	2	1	2
11	전화방, 화상방	2	2	-	-	-
12	게임물시설(미니게임기)	-	-	-	-	-
13	신.변종업소	15	20	12	7	7
합 계		44	40	24	15	11

※ 신·변종업소: 마사지, 휴게텔, 성인PC방, 키스방, 수면방, 귀청소방 등

※ 전화방(화상채팅, 성인PC방 등 신변종업소 포함)은 2018년도부터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집중단속 추진: 2018년 7개 → 2022년(현재) “0개”

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현황

2022.7.1. 기준

☐ 불법업소에 대한 정화요청 및 고발 조치 현황

연도	불법업소 수 (이전폐쇄대상 및 무단설치업소)	정 화요청/고발(건)			조 치 건 수(건)						
		정 화 요청	고 발 건수	계	자진 폐업	업종 전환	위치 이전	허가 취소	정화구 역조정	기타	계
2018	44	84	29	113	17					1	18
2019	40	80	17	97	2					1	3
2020	24	53	11	64	12	3	1			3	19
2021	15	28	6	34	7	1	1			3	12
2022 (상반기)	11	10	3	13						5	5

※ 유해업소(이전·폐쇄대상과 무단설치 업소) 들은 대부분 생계형 업소로 고발하여도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

☐ 학교주변 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 현황[illegible]

참고 3

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현황

2022. 12. 1. 기준

□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교육환경평가 현황

○ 서울특별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현황(재심의 포함)

연도	심의횟수	학교설립	정비사업	대규모건축	기타	계	비고 (승인율)
2018	11회	2	37	13	4	56	59%
2019	12회	3	28	8	8	47	62%
2020	12회	4	23	18	6	51	55%
2021	12회	5	30	39	6	80	68%
2022	13회	0	30	20	6	56	68%
합계	60회	14	148	98	30	290	

※ 참 고

- 분과위원회 2017년 1회(2건), 2018년 2회(4건), 2019년 1회(2건), 2020년 1회(1건) 미포함
- 2022년(12.1.기준) 심의: 56건 중 승인 38건(68%) / 보완 18건(32%) / 불승인 0건

□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유해업소 심의 현황

연도	심의횟수	심의건수	해제		금지		위원 현장방문	비고
			건수	비율	건수	비율		
2018	154	561	277	49.4%	284	50.6%	558	
2019	150	473	229	48.4%	244	51.6%	466	
2020	95	211	123	58.3%	88	41.7%	211	
2021	66	115	83	72.2%	32	27.8%	115	
2022 (상반기)	35	68	48	70.6%	20	29.4%	68	

※ 매년 지속적으로 심의 건수 감소(2009년도 심의횟수 220회, 1,365건 대비 2019년도 2/3 감소)

※ 코로나-19에 따른 경제여파로 전년 대비 심의건수 감소(2019년도 473건 → 2020년도 211건, 1/2 감소)